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5년 2월 11일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4일 삼척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 2. 11)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총무과장 홍성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해 오던 기구의 증설등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에 의거 시의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사무분장을 위해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과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둠.
○ 총무국에는 6개과(총무, 사회진흥, 세무, 회계, 시민, 지적)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7개과 (사회, 가정복지, 환경보호, 지역경제, 교통관광, 농정, 수산)를 두며, 건설도시국에는 5개과(건설, 도시, 주택, 수도, 산림)를 둠.

○ 사회진흥과와 시민과는 '99. 12. 31까지 한시 기구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원표)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것을 시·군 통합에 따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동규정이 공포('94. 12. 31)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시군 자치기구 설치기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에는 6개과(총무, 사회진흥, 세무, 회계, 시민, 지적)를 사회산업국에는 7개과(사회, 가정복지, 환경보호, 지역경제, 교통관광, 농정, 수산)를, 건설도시국에는 5개과 (건설, 도시, 주택, 수도, 산림)를 증설기구에 포함 조례에 정하였으며,

○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